

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

채권자 ㅇㅇ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1. 집행권원의 표시

위 당사자간 귀원 2000가소000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

1. 불이행 금전채무액

금 ○○○원(집행권원상의 채무전액)

신 청 취 지

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며, 위 판결은 20 OO. OO.에 확정되었는바, 그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.
- 2. 그러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신청을 합니다.

첨 부 서 류



1.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

1통

1. 주민등록표초본(채무자)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제출법원	·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들 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: 채무자드를 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(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)		
	·명시기일 불출석,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, 선서 거부, 채무자가 거 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: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(민사집행		
	법 제70조 제3항) •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(민사집행법 제21조).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 련 법 규	민사집행법 제70조
불복절차 및 기간	· 등재 및 등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) 다만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 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 조 제2항)		
비 용	・인지액 : 1,000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・송달료 : 당자자수×1회 우편료×5회분		
기 타	료(민사집행법 제70조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제31조 제2항)를 내이 ·채무자가 6월 이내에 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시기일조서등본을, 거	조 제2항)와 채목 소가 있는 곳)를 함 함. 대무를 이행하 확정판결 등 집 또는 선서거부 지의 재산목록2 열, 불기소처분(2	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 구자의 주소(채무자가 법인인 소명하는 자료(민사집행규칙 사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재신 집행권원을, 명시기일 불출석, 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명 세출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 기소유예), 수사결과통지서 등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총칙